

주요 외국의 금고제도 운영 및 시사점

지방자치단체 금고제도의 현황

○ 자치단체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위탁금고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함

○ 각 자치단체는 약정기간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단수 또는 복수의 금고를 지정하고 있음

- 2017년말 금고계약이 만료되는 광역자치단체는 대전, 강원, 충북, 전남 4곳이며, 서울, 인천, 세종, 제주도 2018년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음

〈주요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현황〉

지역	규모(조원)	1금고	2금고	운영기간	약정기간
서울	29.8	우리은행	우리은행	2015~2018	4년
부산	11	부산은행	국민은행	2017~2020	4년
대구	7.9	대구은행	NH농협	2016~2019	4년
인천	8.3	신한은행	NH농협	2015~2018	4년
광주	4.4	광주은행	국민은행	2017~2020	4년
대전	4.1	하나은행	NH농협	2014~2017	4년
울산	3.2	경남은행	NH농협	2017~2019	3년
세종	1.2	NH농협	하나은행	2014~2018	4년
경기	20	NH농협	신한은행	2017~2021	4년
강원	5.4	NH농협	신한은행	2014~2017	4년
충북	4.8	NH농협	신한은행	2015~2017	3년
충남	5	NH농협	하나은행	2016~2020	4년
전북	5.1	NH농협	전북은행	2016~2019	3년
전남	6.3	NH농협	광주은행	2015~2017	3년
경북	7.7	NH농협	대구은행	2017~2019	3년
경남	7	NH농협	경남은행	2017~2019	3년
제주	4	NH농협	제주은행	2016~2018	3년

자료: 각 자치단체, 규모: 예산액 기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현안

○ 은행의 과도한 출연금 및 협력사업비 지출과 자치단체의 불투명한 협력사업비 관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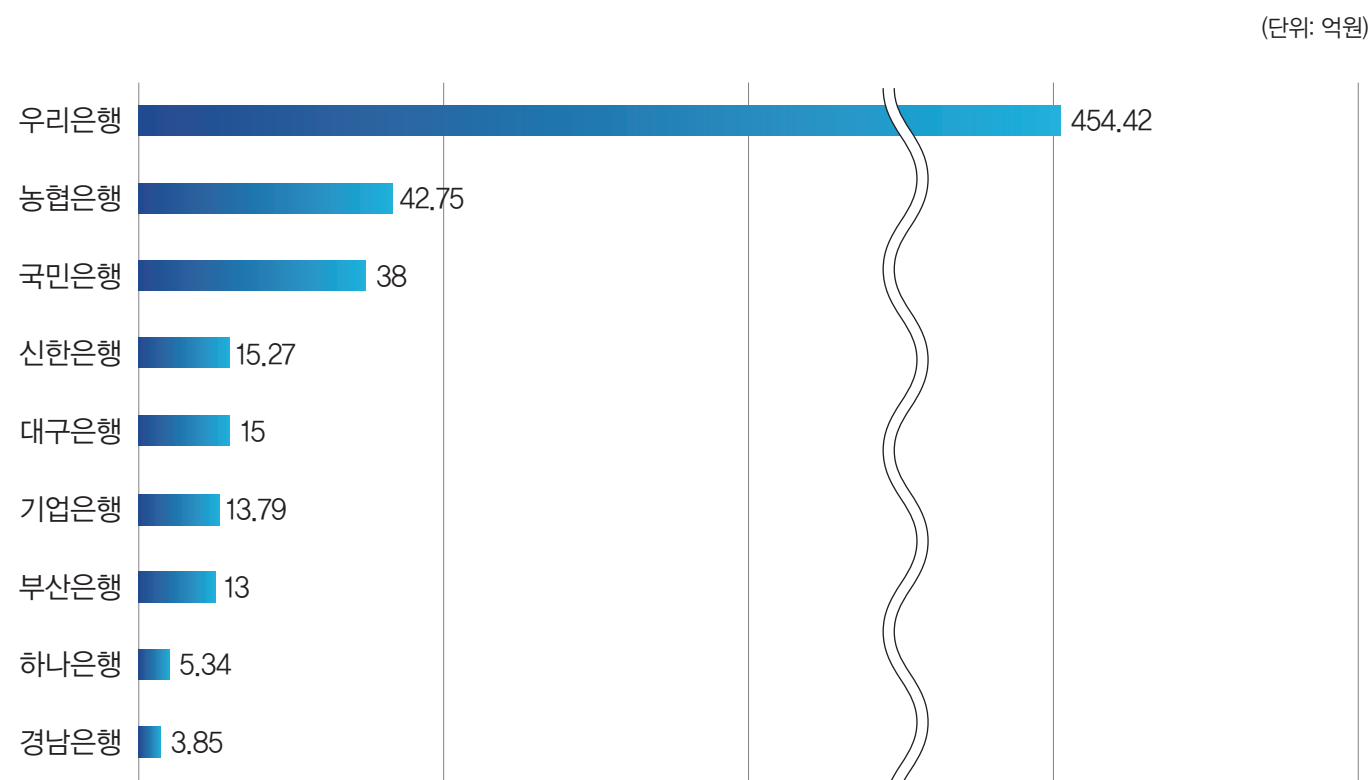
- 건전성이나 금리는 시중은행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출연금 규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지적임

-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고 운용 수익이 크지 않음에도 은행의 이미지 제고와 연계영업의 이점으로 은행들이 과도한 출연금과 협력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음

- 전국은행연합회 이익제공공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9개 시중은행이 출연금 및 협력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1,600억원임

〈은행권 자치단체 금고, 출연금 협력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자료: 은행연합회 공시, 2016년도 기준

○ 금고의 수 및 약정 기간 등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자치단체가 회계별로 최대 2개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할 때의 장단점이 불분명함

- 또한 금고의 약정기간은 통상 3년 또는 4년으로 되어 있지만, 금고 재지정 주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 자치단체 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 자금관리 방안이 미흡함

- 집중계좌, 영계좌, 현금흐름 예측시스템 등의 효율적 현금흐름 장치가 미비되어 있음

- 각 부서별 자금관리로 유휴자금이 적시에 투자되지 못함

- 이에 따라, 한 부서의 유휴자금이 예금계좌에 머무는 동안, 다른 사업 부서는 유동성 부족으로 단기 차입을 필요로 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주요국 자치단체 금고 운영사례

○ 자치단체 금고운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주요국의 금고제도 운영을 살펴보고자 함

〈주요국 자치단체의 금융기관 계약사례〉

비교항목	미국		호주	일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도쿄도	신주쿠 구
자치단체 성격	주정부	시정부	주정부	광역	기초
금고제도	거대 은행	주거대 은행	거래금융기관	지정금융기관	
금고지정 방법	수익계약	경쟁입찰	경쟁입찰	수익계약	
금고의 수	복수 (8개)	단수	단수 (우선적 공급자)	단수 (이외 금고업무 일부를 대리하는 지정 대리금융기관, 수납대리금융기관 활용)	
약정기간	기준총족시 거래은행 자유유지	최초 5년, 이후 2년 연장 가능	최초 5년, 후속 계약기간 5년	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을 지정, 이후 계약 만료 시 재지정	
취급사무	일반적인 은행업무 (전산이체, ACH, 직접 지출, 락박스, 지급정지 서비스, 온라인 금융거래 등)			공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보관	
비용 지불방법	수수료 지급 및 잔고유지			수수료 지급 및 잔고유지	
기초-광역간 수납체계	분리			분리	
특징	주정부의 집중계좌 시스템(CTS)에서 다수의 시중은행과 거래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업무와 기금운용 분리	주정부 산하의 금융공기업(WATC)이 기금운용 담당	자치단체에 담보 제공	도쿄도와 별도로 독자 회계시스템 운영

○ 미국, 호주에서는 공금의 수납·지급 사무와 기금의 운용을 기능별로 이원화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주정부 집중계좌 시스템(Centralized Treasury System)에서 현금 흐름을 통제하고, 주 재무관이 공동현금투자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Board, PMIB)에서 안정성, 유동성, 수익률 원칙에 따라 자금 운용을 결정함

- 샌프란시스코 시는 전산이체(wire transfer), 자동정산소(ACH), 락박스(lockbox), 온라인 금융거래 등의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위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공금의 투자는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해 활용하고 있음

○ 사례에서 살펴본 미국, 호주, 일본의 자치단체 금고 약정기간은 5년 이상이며, 계약기간 동안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 실패 사례가 없는 한 자치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 연장이 가능함

- 도쿄도의 경우 자치부의 약정기간은 3년이나 문제점을 체크하여 문제가 없으면 1년 단위 수익계약으로 약정기간 연장함

○ 경쟁 입찰시 제안서 평가의 주된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제공 가능한 금융상품의 다양성 및 기술적 제공 능력임

- 샌프란시스코 시는 은행의 제안서 평가 시 100점 만점의 평가표 중에 제공 계좌의 기능(30), 전산운용 능력(30), 대정부 관계(20)에 8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초점을 두고 은행과 긴밀한 협력 관계형성을 중시함

-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대 은행을 선정함

- 서비스 실패(service failure) 발생 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 은행과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을 중요시 함

주요국 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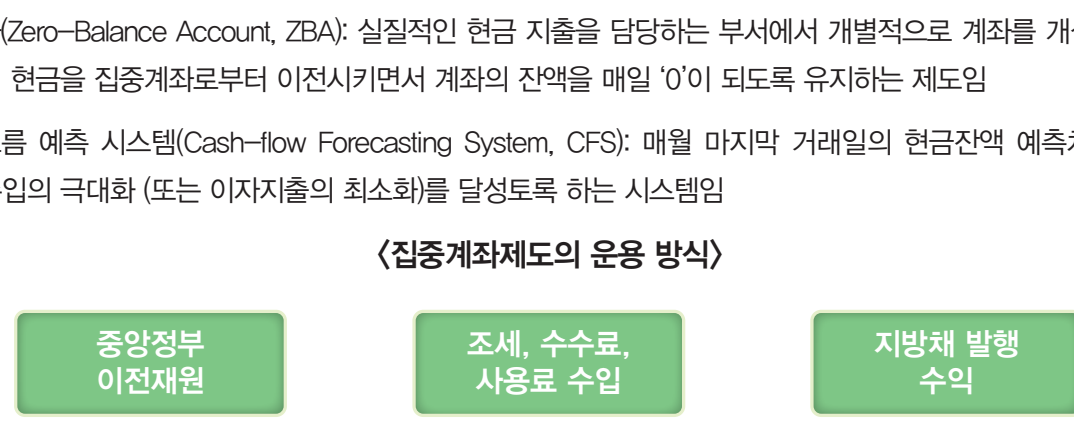
○ 집중계좌, 영계좌, 현금흐름 예측 시스템 등의 효율적 자금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이 필요함

- 집중계좌제도(Concentration Account): 모든 현금 수입을 하나의 계좌로 집중시켜, 이 계좌를 중심으로 지출에 필요한 현금의 배정 및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임

- 영계좌(Zero-Balance Account, ZBA): 실질적인 현금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지출액 만큼의 현금을 집중계좌로부터 이전시키면서 계좌의 잔액을 매일 '0'이 되도록 유지하는 제도임

- 현금흐름 예측 시스템(Cash-flow Forecasting System, CFS): 매일 마지막 거래일의 현금잔액 예측치를 제공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 (또는 이자지출의 최소화)를 달성하도록 하는 시스템임

〈집중계좌제도의 운용 방식〉



○ 금고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금고 지정 및 계약기간 조정이 요구됨

- 성공적으로 유지되는 은행관계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성 차원에서라도 자주 교체할 필요성이 떨어지며, 계약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 너무 짧은 약정기간은 은행간 지나친 경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너무 긴 약정기간은 계약기간동안 변화하는 금융 환경 하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기술혁신 등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단점이 존재함

- 이를 고려할 때, 현행 금고지정 기준 예규에 정한 바와 같이 4년 주기로 약정기간을 체결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필요경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 조항이나 「최혜국 조항(most favored nation clause)」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동종단체가 유리한 계약을 맺었을 때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역량 강화가 필요함

- 은행의 출연금협력사업비는 약정기간 동안 은행이 자치단체의 자금을 운용해 주고 이에 대한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미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는 자체 금융 공기업의 활용 등으로 자체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추구하고, 주거대은행으로부터 출연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음

- 출연금 규모 등으로 인한 은행의 과도한 출혈경쟁 및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투자역량 강화를 통해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